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도 및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일부 유료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기준을 신고수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승인 절차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절차를 정하며,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술결합서비스: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3.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절차(안 제13조의4)

- 1)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제공 사유 및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절차(안 제60조의6)

- 1)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2)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가입비, 기본료 등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함.

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절차(안 제65조의3 신설)

-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등을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으로 정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을 통지

하도록 함.

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66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장애인의 방송 시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방송이나 재난방송 등에 관한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8. ~ 3.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의 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을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를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로, “승인·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을 포함한다)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을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승인·등록”을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승인·등록”을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0조의6의 제목 “(약관 변경의 통지)”를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6제6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을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

관을”로,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을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6월의 범위내”를 “6개월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3 앞의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을 삭제한다.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를 각각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6까지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4(중전의 제65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 위정보방송에 관한 지원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다른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

6.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
사업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
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권한”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1
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중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에 관한 업무”를 “업무”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별표 1의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 리를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 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	---------------	----------------------------	--

별표 3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초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나목

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	500
---	-----------------	-----

코. 법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2항	300
---	------------	-----

별표 4 제2호다목(중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를 하지 않고”를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

별표 4 제2호서목(중전의 버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중전의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6항”으로, “약관”을 “이용약관의”로 한다.

서.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를 받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1)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유료방송을 한 경우

2)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
료방송을 한 경우

별표 4 제2호고목(중전의 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중전의
도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로.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
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방송
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
우는 제외한다.

별표 5 I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2항	1,000만원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부터 제6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① 법 제9조의3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승인·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 ----- ----- ----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을 포함한다)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술결합서비스 방식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8. 그 밖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60조의6(약관 변경의 통지) <신설>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

-----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

----- 해당 -----

----- 통지해야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

<신 설>

<신 설>

라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
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
용약관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
사유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
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 설>

<신 설>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
 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
 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채널번
 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한 경우
 에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
 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
 다.

1. ~ 5. (생략)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
 사 등) ①법 제79조제2항 및 동
 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한”이라 함은 종합유선방
 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
 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
 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
 부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

 ----- 법 제77조제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
 관을 ----- 이용약관을 변경
 한 경우로 -----
 각 호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
 한) ①----- 제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

 ----- 받거나 -----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제1

<삭 제>

<삭 제>

⑤-----

-----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유
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6월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 설>

항에 따른 -----

경우에는 -----

-- 6개월의 범위-----

-----.

<삭 제>

<삭 제>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
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
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
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
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
는 광고 현황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65조의3 ~ 제65조의5 (생략)

제65조의4 ~ 제65조의6 (현행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와

<신 설>

같음)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지원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제82조

	<u>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u> 6. <u>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u> 7. <u>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u> 8. <u>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지원</u> 9. <u>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u>
<u>제66조의2 ~ 제66조의5 (생략)</u>	<u>제66조의3 ~ 제66조의6 (현행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와 같음)</u>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관한 권한</u> 을 중앙전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u>권한</u> -----

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1의2. · 1의3. (생략)

2. 법 제79조제2항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79조제2항 전단 · 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

-----.

1. (현행과 같음)

1의3. · 1의4.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업무-----

-----.

-----.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삭제>

<u>한 사항</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522